

G20 서울 정상회의 관련 집회시위 경비방안*: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The Policing of the G20 Seoul Protests: A Case Analysis on the Death of Ian Tomlinson

이 주 락**

〈 목 차 〉	
I. 서론	IV. 한국경찰의 집회시위 경비방안
II. 톰린슨 사망사건의 주요내용	V. 결론
III.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상의 문제점	

〈요 약〉

이번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도중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서울 정상회의시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의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반세계화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도중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사망한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건을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적용 가능한 집회시위 경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찰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 및 훈련부족, 언론에 대한 미숙한 대처,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부족, 케틀링(Kettling) 기법의 남용, 경찰관 인식표 미착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평화시위의 유도, 물리력 사용의 기준 확립과 훈련의 강화, 언론 및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경찰관의 책임성 향상 등을 G20 서울 정상회의시의 집회시위 경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G20 정상회의, 정상회의의 경호경비, 이안 톰린슨, 반세계화 집회시위, 사례분석

* 이 논문은 2010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G20 정상회의는 처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재무장관 협의기구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전 세계 최고의 포럼으로 격상되었으며 그 논의의 결과는 지구촌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2010: 7). 이처럼 중요한 회의를 우리나라가 아시아와 신흥국을 통틀어 처음 개최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과거의 정상회의들과 마찬가지로 G20 서울 정상회의시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러한 반세계화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후진국형 집회시위문화를 청산하고 시민과 경찰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확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시 발생하였던 집회시위 사례를 살펴보고야 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당시, 런던의 금융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시티지역(City Area)에서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경찰은 강경한 진압정책을 펼쳤고, 그 도중에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이라는 단순 행인이 경찰과의 물리적 접촉 후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집회시위는 더욱 격화되었으며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게 되었다. 결국 톰린슨 사망사건을 계기로 영국정부에서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했다.¹⁾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영국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우리 경찰이 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된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영국의 경우와 같이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경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시 발생하였던 집회시위와 톰린슨 사망사건을 사례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치안환경에 알맞은 G20 정상회의 집회시위 경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Critics assail British police for harsh tactics during the G20 summit meeting, The New York Times, 30 May 2009.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언론보도와 동영상자료 분석 등을 통해 톰린슨의 사망 및 사건의 이슈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또한 톰린슨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상의 문제점을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우리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시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학술적 연구 자료보다는 톰린슨 사망과 관련된 인터넷자료와 영국 왕립경찰 감사관실(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HMIC)이 발행한 집회시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톰린슨 사망사건을 주제로 다룬 학술적 연구가 전무하여 참고할 만한 학술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²⁾

II. 톰린슨 사망사건의 주요내용

1. 사건의 배경

1)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두 번 결혼하여 아홉 자녀(의붓자식 포함)의 아버지였던 톰린슨은 사망 당시 45세였으며 친구가 운영하는 신문가판대에서 판매를 돕고 있었다. 톰린슨은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인해 가족과 별거 중이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숙자 생활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톰린슨은 사망 약 6개월 전부터 런던 시내의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사망당일에도 신문판매를 마치고 쉼터로 돌아가는 중이었다.³⁾

2)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NGO 집회시위의 성향을 분석하여 ASEM 서울 정상회의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제시한 양재열(2001)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우리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예: 김환권, 2008; 송병호, 2007; 송병호·최관, 2006; 최용력, 2005). 국외에서도 집회시위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시 발생하였던 톰린슨 사망사고를 주제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톰린슨 사망 사고의 여파로 2009년 4월 런던 경찰청은 집회시위 정책의 전면적인 검토를 왕립경찰감사관실에 의뢰하였고, 왕립경찰감사관실은 "Adapting to Protest"라는 제목으로 검토보고서를 두 차례 발간하였다. 이 검토 보고서는 경찰활동은 시민의 동의와 협조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이와 관련하여 집회시위 대응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도 톰린슨사망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영국경찰의 전반적 집회시위 대응실태만을 분석하고 있다.

3) G20 death video 'touches' family, BBC News, 8 April 2009.

2) 런던 경찰청

런던경찰청(The 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영국에서 가장 큰 경찰기관으로서 금융 중심지인 시티지역(City Area)을 제외한 광역 런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시티지역은 런던경찰청과 독립된 자체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고, G20 런던 정상회의시 이 두 경찰기관과 영국교통경찰(The British Transport Police)이 협력하여 경호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⁴⁾. 톰린슨과 물리적 접촉을 한 경찰관은 런던경찰청 산하의 기동대(Territorial Support Group: TSG) 소속이었는데, 시위진압과 질서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이 부대는 2009년 현재 720여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3) 글렌코작전(Operation Glencoe)

G20 런던 정상회의와 관련한 경호경비작전은 글렌코작전으로 불리었고, 런던경찰청의 Commander(치안감급)였던 Bob Broadhurst가 총괄 지휘하였다. 2009년 4월 1일에 영국경찰은 총 6개의 집회시위(정상회의장 외부에서 열리던 ExCel London, 트라팔가광장 인근에서 열리던 Stop the War, 중국대사관 밖에서 열리던 Free Tibet, 환경관련 시위였던 People & Planet과 Climate Camp, 대영은행 외부에서 열리던 이름 없는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었다.⁶⁾

시위자들은 비폭력적인 환경보호론자로부터 매우 폭력적인 무정부주의자까지 다양하였다. 4월 1일의 집회시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집회시위는 Climate Camp와 대영은행 외부에서 발생하였던 무명(無名)의 집회시위로, Climate Camp에는 약 4,000~5,000명의 시위대가 운집하였고 대영은행 밖에도 비슷한 숫자의 시위대가 집결하였다. 영국경찰은 4월 1일 약 5,500명의 경찰관을 동원하여 집회시위에 대응하였으나, 다음 날인 4월 2일에는 시위대의 규모가 감소하여 대응경찰관의 수를 2,800명으로 축소하였다(O'Connor, 2009a: 22-23).

2. 톰린슨 사망사고 과정

1) 경찰과의 최초 접촉

언론보도에 따르면 톰린슨은 시위자가 아닌 단순 행인이었다고 한다.⁷⁾ 톰린슨이 경찰과

4) G20 to be most expensive police operation in British history, The Daily Telegraph, 20 March 2009.

5) Blair Peach, 30 years on, The First Post, 8 April 2009.

6) G20 protests: Cry havoc - and let slip a rainbow alliance of summit protesters, The Guardian, 28 March 2009.

최초로 접촉한 곳은 평소 그가 퇴근할 때 이용하던 길이었다. 4월 1일 톰린슨은 오후 6시에 서 7시 사이 일을 마치고 신문가판대를 떠났는데, 목격자에 의하면 톰린슨은 이때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퇴근하던 톰린슨은 영국경찰이 대영은행 주변에 설정한 케틀링(Kettling)⁸⁾에 막혀 다른 수천 명의 시위대와 함께 그 지역에 갇혔고, 이후 톰린슨은 케틀링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지만 여러 곳에 설치된 경찰의 저지선에 막혀 케틀링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⁹⁾

2) 경찰과의 물리적 접촉

목격자에 의하면 4월 1일 7시 20분 경 Royal Exchange거리에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 중 한 명이 길을 가던 톰린슨을 뒤에서 경찰봉으로 다리를 가격한 후 밀어 넘어뜨렸다고 한다. 톰린슨은 앞으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와 어깨를 세게 부딪쳤고 잠시 항의를 하였으나 이내 다시 일어나 케틀링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떠났다. 넘어질 당시 톰린슨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평화롭게 길을 걷고 있었으며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¹⁰⁾

〈그림 1〉 톰린슨과 경찰의 물리적 접촉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Ian_Tomlinson, 검색일자: 2010.9.15.

7) Ian Tomlinson: 'See you tomorrow, Barry, if I'm still living and breathing', The Times, 9 April 2009.

8) 컨테인먼트(Containment) 또는 커렐링(Corralling)이라고도 불리는 케틀링(Kettling)은 집회시위시 많은 시위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기법이다. 케틀링은 저지선을 들고 대형을 형성한 경찰관들이 시위대를 정해진 지역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둘러싸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저지선이 형성되면 시위대는 경찰이 허가할 때까지 여러 시간 동안 케틀링 지역을 떠나지 못한다. (<http://en.wikipedia.org/wiki/Kettling>, 검색일자: 2010.6.15.)

9) G20: The last moments of Ian Tomlinson, The Daily Telegraph, 18 April 2009.

10) The helper: Ian Tomlinson was obeying police orders, says G20 protester, The Guardian, 9 April 2009.

3) 톰린슨의 사망

경찰과의 물리적 접촉 후 톰린슨은 Cornhill거리를 따라 약 60m를 걸어난 후 오후 7:25경 쓰러졌다. 목격자들은 톰린슨이 쓰러질 당시 비틀대고 있었으며 눈동자가 흔들리고 피부는 회색빛 이었다고 하였다. 쓰러진 톰린슨을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톰린슨은 병원 도착 즉시 사망판정을 받았다.¹¹⁾

3. 이슈화 과정

1) 경찰의 초기발표와 목격자의 진술

톰린슨 사망 4시간 후 런던경찰청은 독립경찰민원위원회(The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IPCC)¹²⁾의 검토를 받아 톰린슨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경찰과의 물리적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런던경찰청의 성명에서는 단지 한 남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아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였고 이러한 출동과정에서 오히려 시위대가 출동경찰관들에게 돌과 생수병 같은 물건들을 투척하였다고 발표하였다.¹³⁾

그러나 성명 발표 직후 목격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언론보도에 의해 경찰이 공격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명 발표시점에 런던경찰청이 이미 톰린슨의 경찰관과의 물리적 접촉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The Guardian에 따르면 독립경찰민원위원회의 내부지침상 경찰과의 접촉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또 그러한 사망과 부상의 주원인이 경찰과의 접촉이었을 경우 경찰은 독립경찰민원위원회에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따라서 The Guardian은 만약 런던경찰청이 톰린슨의 경찰관과의 물리적 접촉을 자신들이 발표한 성명과 같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독립경찰민원위원회를 성명발표에 개입시킬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독립경찰민원위원회가 개입한 사실은 경찰이 성명발표 이전에 물리적 접촉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런던경찰청은 물리적

11) Ian Tomlinson: 'See you tomorrow, Barry, if I'm still living and breathing', The Times, 9 April 2009.

12) 독립경찰민원위원회(The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IPCC)는 2002년 제정된 경찰개혁법(The Police Reform Act)에 의해 창설되었고, 2004년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독립경찰민원위원회는 경찰과의 유착으로 대중의 불만을 샀던 기존의 경찰비리민원조사처(The Police Complaint Authority: PCA)를 대체하는 기구로서, 경찰비리민원조사처와 달리 경찰의 상급부서인 내무부(The Home Office)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다(http://en.wikipedia.org/wiki/Independent_Police_Complaints_Commission, 2010.6.18. 검색)

13) Metropolitan Police Service, 1 April 2009, 23:36 hours: G20 fatality: How police view of Ian Tomlinson death changed, The Guardian, 8 April 2009.

접촉에 관한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라는 부검결과를 언론과 톰린슨의 가족에 전달하였다.¹⁵⁾

2) 관련 동영상의 출현

톰린슨의 사망 며칠 후 이 사건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총 4건의 동영상 이미지가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가장 먼저 공개된 동영상(2009년 4월 7일 공개)은 사건 당일 호기심에 시위현장에 갔었던 미국인 증권투자전문가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이 동영상은 경찰관이 톰린슨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¹⁶⁾ 두 번째 동영상(2009년 4월 8일 공개)은 방송국 뉴스 카메라 기자가 다른 인터뷰를 촬영하다 톰린슨의 넘어지는 모습을 우연히 배경화면에 담은 것이었다. 이 동영상은 톰린슨을 밀어 넘어뜨린 경찰관이 밀치기 직전 경찰봉을 든 손을 머리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톰린슨이 경찰봉으로 맞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었다.¹⁷⁾

세 번째 동영상(2009년 4월 9일 공개)은 프리랜서기자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서, 톰린슨이 넘어진 직후의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 이 동영상은 시위대가 경찰에 앞서 톰린슨을 도와주려 했지만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또 이 동영상은 영국경찰의 초기 발표와는 달리 시위대가 톰린슨을 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물건도 던지지 않았고 위협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¹⁸⁾.

네 번째 동영상(2009년 4월 21일 공개)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행인에 의하여 촬영된 것으로서 톰린슨과 경찰과의 물리적 접촉 장면을 이를 최초로 공개한 동영상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었다. 이 동영상은 톰린슨이 경찰봉에 의하여 가격 당하였으며 톰린슨이 넘

14) Can the police and the media trust each other?, The Guardian, 27 April 2009.

15) 톰린슨 사망 후 세 번의 부검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부검은 경찰의 요구에 의해 내무부(Home Office)에 등록된 부검의인 파텔박사(Dr. Freddy Patel)가 행하였는데 그는 톰린슨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독립경찰민원위원회도 톰린슨의 머리와 어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톰린슨 신체의 다른 부분에 상처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의 방송사인 Sky News는 그들이 입수한 화면에 의하면 톰린슨이 넘어진 직후 그의 오른쪽 이마에 멍이 보인다고 하였다. 또 여러 언론사들이 파텔박사가 이전에도 잘못된 부검으로 두 번에 걸쳐 징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1차 부검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후 톰린슨의 가족들이 재부검을 요청하고 독립경찰민원위원회가 재부검을 명령하여 2차 부검이 실시되었는데, 부검의인 캐리박사(Dr. Nathaniel Cary)는 톰린슨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복부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1차와 2차 부검 결과가 서로 달라 톰린슨을 폭행하여 기소된 경찰관의 변호인단은 3차 부검을 요청하여 3차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아직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Officer under investigation over Ian Tomlinson's death 'should not have been working for Met', The Sunday Telegraph, 5 July 2009.)

16) Man who filmed Ian Tomlinson G20 attack backs investigation, The Guardian, 8 April 2009.

17) Truth behind Tomlinson footage, Channel 4 News, 13 April 2009.

18) New G20 video compounds doubts over police account of Ian Tomlinson's death, The Guardian, 9 April 2009.

어질 때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음을 알려주었다¹⁹⁾. 결국 이러한 동영상들의 공개로 인해 경찰의 사건은폐 및 축소조작 의혹은 증폭되었고, 톰린슨 사망사건을 넘어서 영국경찰의 시위 대응방식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었다.

III.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상의 문제점

과거 영국경찰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경찰활동을 수행하였으나 그러한 전통은 집회시위 경찰에 대한 폭력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1990년대에 보다 공격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영국경찰이 집회시위 대응시 항상 진압복을 착용하고 방패, 경찰봉, 수갑 등을 휴대하는 것도 1990년대 이래의 일이었다²⁰⁾. 최근까지 경찰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경찰이 국민을 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간혹 있었는데, 톰린슨의 사망은 이러한 비판을 가속화 시켰고 영국 전역에서 경찰활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다음은 그러한 논의 중 제기된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상의 주요 문제점들이다.

1.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 및 훈련부족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영국형법 제3조에서는 “만약 경찰관이 자신이 사용한 물리력을 정당화 할 수만 있다면 물리력의 사용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The Criminal Law Act 1967). 그러나 부당하거나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은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모든 경찰관들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물리력 사용의 한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톰린슨 사망사건에 이은 왕립경찰감사관실의 조사에 따르면 집회시위 상황 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고 훈련 또한 충분하지 않으며 각 지역에 따라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왕립경찰감사관실은 결국 그러한 모호한 기준과 훈련부족이 톰린슨 사망과 같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²¹⁾.

2009년 당시 집회시위에 관한 영국경찰의 지침서는 경찰서장협의회(The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의 Manual of Guidance on Keeping the

19) New Ian Tomlinson photo appears to show head injury before G20 death, The Guardian, 24 April 2009.

20) Critics Assail British Police for Harsh Tactics During the G-20 Summit Meeting, The New York Times, 30 May 2009.

21) HMIC Policing Protest Report Published - Police Tactics Condemned, Bristol Indymedia, 28 November, 2009.

Peace(2007)와 Manual of Guidance on Public Order Standards, Tactics and Training(2004) 두 가지였다. 이 지침서들은 경찰 지휘관과 일선 경찰관들 모두에게 전략적, 전술적 그리고 실무적 행동지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9: 52).

그러나 이 두 지침서를 검토한 왕립경찰감사관실은 지침서들이 물리력 사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이 지침서들에는 경찰봉과 방패와 같은 경찰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하였다. 왕립경찰감사관실은 결국 이러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과 물리력 사용수준의 한계에 대한 경찰지휘관과 일선 경찰관의 이해부족이 과도하고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 왕립경찰감사관실은 집회시위시 물리력 사용에 대한 법적·실무적 기준이 모호한 것은 총기 등과 같은 치명적 무기 사용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즉 총기 사용에 대한 영국경찰의 지침서에서는 총기사용이 가능한 상황 및 전제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에 비하여, 집회시위시 물리력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와 상황 등에 대한 지침서의 설명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 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하였다(O'Connor, 2009b: 112-113).

이러한 현상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한 훈련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영국에는 총 25개의 집회시위 대응 경찰훈련기관이 있다. 왕립경찰감사관실은 집회시위 대응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중 전문가 훈련(Level 1)과 기본 훈련(Level 2) 및 지휘관 훈련을 제공하는 15개 훈련기관의 집회시위관련 교육계획서와 교재를 검토하였다²²⁾. 검토결과, 왕립경찰감사관실은 교육계획서와 교재에는 물리력 사용에 대한 충분한 언급이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왕립경찰감사관실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영국형법 제3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인권관련 규정 및 사용상 한계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전체 15개 중 1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 왕립경찰감사관실은 실제 훈련내용도 장비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사용한계 및 법적요건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O'Connor, 2009b: 114).

22) 영국에서 경찰관들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3단계의 훈련을 받는다. 가장 낮은 단계인 3단계는 기본훈련으로서 일반 근무복을 입고 비폭력시위에 대응하는 훈련이다. 다음 단계인 2단계에서는 시위진압복과 장비 사용 등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가장 높은 단계인 1단계는 보통 기동대와 같은 시위대응부대가 받는 훈련으로서 폭력시위 대응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3단계 훈련을 받은 대원도 집회시위 장소에서 근무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근무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파견근무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단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O'Connor, 2009b: 93).

2. 언론에 대한 미숙한 대처

G20 런던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영국경찰은 그 동안 쌓아왔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신뢰를 잃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는 언론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인해 경찰에 대한 추측성, 부정적 보도가 많았다는 것이었다. G20 런던 정상회의시에 영국경찰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서 언론이 추측성 보도보다는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이당시 영국경찰은 언론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게 해주는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보지 않았고, 또 언론에 대한 계획이나 충분한 준비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작전을 수행하여 언론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Home Affairs Committee, 2009: 5-6). 언론과의 여러 문제점 중 특히 경찰이 경찰서장협의회의 대언론 지침서를 무시하고 언론인과의 의사소통을 등한시 하였다는 점, 그리고 공공질서법(The Public Order Act 1986) 제14조를 언론인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여 취재활동을 방해했다는 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에 둔감하였다는 점 등이 이번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찰이 언론에 대해 가장 미숙하게 대처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1) 언론과의 의사소통 부족

경찰서장협의회의 대언론 지침은 “만약 언론인들이 공무수행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경찰은 언론인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³⁾.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영국경찰은 G20 관련 집회시위시 BBC와 같은 주요 언론사만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고, 소규모 언론사 및 프리랜서 언론인들에 대한 브리핑이나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영국경찰은 대언론 접촉창구를 만들어 운용했으나 대부분의 일선 경찰관들은 대언론 접촉창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에 대한 안내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브리핑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일부 언론인을 제외한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취재에 필요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Home Affairs Committee, 2009: 7-8).

2) 언론인에 대한 공공질서법의 적용

영국의 공공질서법 제14조는 “경찰지휘관은 무질서나, 손실, 파괴, 위협 등을 끝내는데 필요하다면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The Public Order Act 1986). G20 정상회의시 영국경찰은 공공질서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언론인들을 여

23) ACPO Police-Media guideline(<http://www.epuk.org/Resources/819/acpo-police-media-guidelines>, 검색일자: 2010.6.3.

러 번 집회시위장소로부터 분리시켰는데, 대부분의 경우 왜 분리를 시켰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언론인들로 하여금 경찰이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많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Inquest, 2009: 9).

3) 스트리트 저널리즘(Street Journalism)에 대한 대비부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누구라도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을 녹화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톰린슨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이 이슈화된 과정의 중심에 일반시민들과 프리랜서 언론인이 제공한 동영상이 있었다. 경찰과 톰린슨의 물리적 접촉이 기록된 동영상은 거의 즉각적으로 인터넷 등에 올랐고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를 보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을 스트리트 저널리즘(Street Journalism)²⁴⁾이라 부르는데, 톰린슨사건은 영국경찰이 스트리트 저널리즘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런던 정상회의시 대부분의 일선 경찰관은 자신들의 행동이 촬영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함부로 행동하였다. 그리고 경찰지휘부 조차도 동영상의 존재가능성을 무시하고 경찰 편의의 정보만을 제공하다가 사건을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3.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부족

G20 관련 집회시위시 영국경찰은 언론과의 의사소통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장협의회의 집회시위 대응 지침서에서는 경찰은 시위대와 집회시위 전 및 도중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장관계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긴장관계해소는 물리적 충돌의 필요성을 최소화시킨다고 하였다(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9: 43). 그러나 2009년 G20 집회시위시 영국경찰은 시위대와 소통을 우선시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소통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집회시위대응의 총책임자였던 Commander Broadhurst도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계획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시위대와 소통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작은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자 물리

24) 스트리트 저널리즘(Street Journalism)이란 일반 대중이 뉴스나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리트 저널리즘은 시민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 대중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 참가 저널리즘(Participatory Journalism), 민주 저널리즘(Democratic Journalism), 게릴라 저널리즘(Guerrilla Journalism)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스트리트 저널리즘의 목적은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Bowman & Willis, 2003: 2).

력을 사용할 때 시위대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경고도 미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찰의 소통부족은 평화시위를 폭력시위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발생시켰다²⁵⁾. 이는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유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G20 집회시위시 영국경찰은 자신의 의도를 시위대에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사용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4. 케틀링(Kettling) 기법 사용상의 문제점

G20 런던 집회시위시 대영은행 주변의 시위자들은 4월 1일 오후 12:30부터 같은 날 오후 7:00까지 케틀링지역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7시경 영국경찰은 대영은행 주변의 시위자들을 강제로 해산하기 시작하였는데,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여 시위대가 경찰에 물건을 던지는 등 경찰과 시위대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러한 충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단순행인이었던 톰린슨도 대영은행 주변 케틀링지역에 갇혀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이 같은 사건들로 인해 영국에서는 케틀링기법이 폭력시위를 초래하고 결국 톰린슨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⁶⁾

물론 영국에서 집회시위 대응기법으로서 케틀링의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 케틀링기법은 2001년 노동절 시위 시 런던에서 처음 도입된 후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법률적 심의가 있었고 영국 법원에서는 이를 합법으로 판단하였다. 영국 법원은 Austin 판결에서 경찰저지선이 군중통제와 사람들의 안전 및 기물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케틀링지역에 갇힌 사람 중 다수가 폭력적이고, 시위대가 아닌 사람이나 케틀링지역 구금에 의하여 심하게 영향 받은 사람이 떠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면 케틀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⁷⁾.

케틀링기법은 경찰이 특정지역에 시위대를 모으고 그 지역에 경찰자원과 인력을 집중하여 시위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케틀링기법의 사용에는 무고한 행인이 케틀링지역에 갇히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톰린슨도 집회시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 행인이었지만 케틀링지역에 갇혀 방황하다 경찰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망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찰은 케틀링기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집회시위가 폭력적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하고 무고한 행인이나 비폭력적인 시위자가 케틀링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찰의 경우는 그러하지

25) Critics assail British police for harsh tactics during the G20 summit meeting, The New York Times, 30 May 2009.

26) G20 police authorized to use reasonable force minutes before Tomlinson died, The Guardian, 7 July 2009.

27)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809/ldjudgmt/jd090128/austin.pdf>, 검색일자: 2010.5. 28.

못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4월 1일 대영은행 주변의 집회시위는 케틀링이 시작되기 전까지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케틀링 시작 이후 충돌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당일의 시위대에 대한 케틀링기법 적용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또 케틀링기법 적용이후 경찰은 비폭력 시위자나 행인이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The Filter System)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케틀링 시작 후 거의 7시간 동안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외에 케틀링지역에 갇힌 시위대에 대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화장실이나 음료수 등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준비 없이 케틀링이 이루어져 시위대를 자극한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Home Affairs Committee, 2009: 15-17). 결국 G20 관련 집회시위시 영국경찰의 케틀링기법 적용은 영국법원에서 규정한 기본적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경찰관 인식표 착용문제

영국에서 경찰관들이 견장에 개인식별 번호를 다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각 경찰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G20 시위를 담당하였던 런던경찰의 복장규정에서는 개인 식별 번호를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정확히 달고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G20 런던 시위 대응작전의 총지휘관도 시위 전 언론 상대 브리핑에서 경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식별 번호의 착용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²⁸⁾

그러나 G20 런던 시위 시 대응경찰관 중 상당수가 이러한 식별번호를 달지 않았고 특히, 톰린슨 사망사건에 있어서나 G20 런던 시위 시 발생한 또 다른 유명사건인 Nicola Fisher 폭행사건²⁹⁾에서도 관련 경찰관들이 식별번호를 제대로 달지 않아,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식별번호를 제거하거나 감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러한 의혹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O'Connor, 2009a: 57-58).

IV. 한국경찰의 집회시위 경비방안

어떤 면에서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은 성공적이

28) How the police fell in love with embroidery, The Guardian, 28 February 2010.

29) 톰린슨 사건 발생 다음 날인 4월 2일에 대영은행 부근에서 시위 중이던 Nicola Fisher를 런던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한 경찰관이 손과 경찰봉으로 가격하였다. 그런데 가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 경찰관의 신원확인 번호가 나타나지 않아 경찰관이 일부러 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Metropolitan police officer suspended over attack at G20 death vigil, The Guardian, April 15, 2009.)

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었다. 이는 단 이틀 동안 6개의 대형 집회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들이 대체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시위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톰린슨 사망과 같은 하나의 불행한 사고로 인해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톰린슨 사망사건과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과격한 시위대응으로 인해 농민 시위대나 철거민들이 사망하여 경찰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경찰조직의 수장까지 경질되는 경우도 있었다.³⁰⁾ 그러므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경찰은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톰린슨 사망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집회시위 경비방안이다.

1. 평화시위의 유도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계획할 때 경찰은 계획의 전 과정에서 평화시위의 유도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화시위가 경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무차별적인 물리력 사용에 의하여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경찰관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물리력을 사용한 조기진압 및 해산 보다는 다소 힘이 들더라도 인내력을 가지고 평화시위를 유도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군중심리 이론 중 하나인 정밀 사회 정체성 모델(Elaborated Social Identity Model)에 따르면³¹⁾, 집회시위시 경찰의 무차별적 물리력 사용은 군중심리

30) 2005년 11월, 충남 보령농민회 소속이었던 농민 한 명이 시위 도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후 사망하였다. 또 같은 해 12월에도 서울 농민집회에 참가하였던 농민 한 명이 목 뒤쪽 경추가 손상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민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들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의 책임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두 농민 모두 외부충격으로 부상당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부검결과가 나와 경찰의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었고 경찰청장이 경질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1월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경찰특공대가 진압 작전을 벌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숨졌다. 이후 특공대원 투입을 통한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임하였다. (<http://ko.wikipedia.org/wiki>, 검색일자: 2010.6.15.)

31) 2009년 7월 왕립경찰감사관실은 집회시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리버풀대학 교수인 Dr. Clifford Stott에게 군중심리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Dr. Scott은 군중심리에 대한 제이론을 검토한 후 정밀 사회 정체성 모델(Elaborated Social Identity Model)에 근거한 집회시위 대응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O'Connor, 2009b: 85).

의 역동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다시 공공질서를 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 즉 경찰의 무차별적 물리력 사용은 경찰의 비정당성(Illegitimacy)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통해 군중사이에 일체감을 형성시키고, 경찰과의 충돌을 정당하고도 필요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전에 혼란야기를 의도하지 않았던 군중들도 경찰과 충돌하게 된다고 정밀 사회 정체성 모델은 설명하고 있다(Reicher et al., 2004: 562-565). 결과적으로 이 모델은 경찰의 물리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평화시위의 유도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영국경찰이 시위대응시 사용하였던 케틀링기법이다. 케틀링기법은 일정부분 군중에 대한 무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에 경찰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켜 평화시위를 폭력시위로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 2009년 영국의 경우에도 케틀링지역에 장시간 감금된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케틀링기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³²⁾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차별적 물리력 사용은 군중심리를 자극하여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경찰은 케틀링기법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물리력 사용의 기준 확립과 훈련의 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톰린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감사에서 왕립경찰감사관실은 영국 경찰이 물리력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한계를 잘 알지 못하고 실제 그에 대한 훈련도 각 경찰기관마다 상이하며 충분하지도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로서 현재 영국경찰은 전국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된 지침서와 훈련교재 및 교육훈련 방식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찰봉이나 방패 같은 집회시위 대응장비들이 인체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검토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O'Connor, 2009a: 109).

영국경찰과 달리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기관의 차이 문제는 덜하겠지만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우리 경찰의 경우 '경찰장비관리규칙'이나 '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일부 위해성 장비에 대한 사용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집회시위 대응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과 한계가 명확한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이고,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그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의 기준과 한계를 집회시위 대응 경찰관들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집회시위

32) 국회의원 신지호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케틀링기법과 같은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기법의 도입에 대하여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현재 경찰청은 케틀링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경비과 000과의 인터뷰, 2010년 6월 27일)

대응의 상당부분을 직업경찰관이 아닌 전의경이 맡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 지식과 책임감이 부족한 전의경이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간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과 전의경의 물리력 사용의 기준과 한계에 대한 인식정도를 정확히 조사한 후 만약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대언론 관계개선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찰은 취재활동을 방해한다는 인상을 언론에 주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활동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자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경찰은 이를 본보기로 삼아 언론의 취재활동을 충분히 보장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언론사나 프리랜서 언론인들에게까지 취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집회시위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장소인 미디어 포인트(Media Contact Point)를 마련하는 방안이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으로 제안되었는데(Home Affairs Committee, 2009: 7-8), 우리 경찰도 시위현장에 미디어 포인트 같은 임시 정보제공 장소를 마련한다면 보다 손쉽게 다수의 소규모 언론사나 프리랜서 언론인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에 제공되는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기사실이나 미디어 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시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언론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경찰이 톰린슨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축소되거나 왜곡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가 후에 제공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동영상들이 나타남에 따라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그러므로 우리 경찰은 스트리트 저널리즘의 확대에 의해 언제든지 경찰의 발표와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는 일이 없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³³⁾. 이는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초기에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최소한 경찰의 정직성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다가 발각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33) 2008년 5월 촛불시위 당시 군화발로 여대생을 폭행한 의경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에 의해 추후 신원이 밝혀져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세계일보』, 촛불시위 '과잉 진압' 논란, 여대생 군화발 폭행 비난 여론 거세, 2008년 6월 2일, <http://www.segye.com/>). 또 2008년 6월에도 경찰간부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부대 대원들에게 "카메라 있는 곳에서는 노약자나 여성을 폭행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인터넷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폭행해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디지털타임스』, 스트리트 저널리즘의 진화, 2008년 6월 18일, <http://www.dt.co.kr/>)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 경찰의 스트리트 저널리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뢰상실이라는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영국 경찰서장협의회는 집회시위 대응지침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와 대화를 통해 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09년 G20 정상회의 당시 영국경찰은 시위대와의 소통을 등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경찰도 이번 가을 G20 정상회의시에 영국경찰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집회시위 전, 그리고 집회시위 도중에 시위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보장과 평화시위유도라는 경찰의 의도를 시위대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 경험상 정상회의시에는 무정부주의자나 반국가주의자 등과 같이 지도부가 없는 시위대가 많으므로 경찰이 이러한 시위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방송을 통해 시위대 전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영국의 한 보고서(Home Affairs Committee, 2009: 12)에서는 지휘부가 없어 경찰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가장 많은 물리적 충돌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평화시위정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스웨덴의 대화경찰(The Dialogue Police)이라는 제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01년 스웨덴의 고텐버그에서 있었던 EU 정상회의 이후 스웨덴 경찰은 시위대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화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³⁴⁾. 대화경찰은 시위대와의 의사소통을 전담하는 경찰관으로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시위대와 경찰지휘부를 연결하여 상호간의 의도를 전달하는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대화경찰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스웨덴 경찰이 시위대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대화경찰이라는 전문요원을 활용함으로써 시위대와 경찰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이전에 비해 시위대와 경찰관의 물리적 충돌이 획기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가졌다(Madensen & Knutsson, 2010: 141).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정보과 직원이 시위대와의 의사소통을 주로 맡고 있다. 그러나 정보과는 대화라는 역할 이외에도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시위대의 처벌에도 관여하므로 시위대의 신뢰를

34) 고텐버그에서는 50,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2,500여명의 시위 대응경찰을 압도하였다. 그 결과 첫날부터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경찰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만 했다. EU 고텐버그 회의의 통해 정상회의시 반세계화 시위에 대비한 경호경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A history of violent protest at G20 world trade meetings, The Times, 21 March 2009)

얻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보다 더 중립적이고 시위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서 시위대와의 의사소통을 전담하는 보직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경찰관의 책임성 향상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경찰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촬영되며 인터넷을 통해 즉각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지휘부는 시위대용 경찰관들에게 모든 행동이 공개되며 기록에 남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켜 시위대용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경찰관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경우와 같이 경찰관들의 시위진압복장에 인식표를 부착하여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한 경찰관들의 신원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찰관의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경찰의 일반 근무복과 기동복에는 명찰이 있지만 진압복의 경우 어떠한 개인 인식표시도 없어 기동복 위에 진압복을 입고 헬멧을 쓰면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진압복을 착용하였을 시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압복에 인식표를 착용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식표는 경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보다는 추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로 표시함이 타당하다. 또한 런던경찰의 경우, 기존의 빼지 형태로 된 식별번호가 쉽게 떨어진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불평에 따라 2010년 2월부터 자수형태로 된 식별번호로 개선하였으므로³⁵⁾ 이러한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이번 가을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도중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런데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회의에서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의의 경호경비 책임을 맡은 경찰은 발생가능한 집회시위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정상회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5) Rouse, Rose. How the police fell in love with embroidery, The Guardian, 28 February 2010.

현재 우리나라의 후진국형 집회시위문화를 청산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확립의 계기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도중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사망한 이안 톰린슨의 사건을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시 적용 가능한 집회시위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응방안으로는 평화시위의 유도, 물리력 사용의 기준 확립과 훈련의 강화, 언론과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경찰관의 책임성 향상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적 방안에 우선해야 할 것이 집회시위 대응에 관한 경찰의 기본원칙 확립이다.

불법적인 폭력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2009년 런던에서 있었던 톰린슨 사망사례는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톰린슨 사망으로 인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런던 경찰청은 경찰의 집회시위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왕립경찰감사관실에 의뢰하였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왕립경찰감사관실은 영국 근대경찰의 창시자인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의 원칙, 즉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The police are the public and the public are the police)"라는 원칙으로의 회귀가 근원적인 치유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O'Connor, 2009b: 29). 이는 경찰권의 행사가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근거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톰린슨의 사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경찰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준다. 우리 경찰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집회시위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489호, 2006.8.22. 일부개정)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일부개정)
- 김환권(2008).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5(2): 3-28.
- 송병호(2007). “한국의 집회시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149-182.
- 송병호·최관(2006).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5(2): 81-112.
- 양재열(2001). “ASEM정상회의시 NGO집회 및 시위 성향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 169-187.
- 최응렬(2005).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조성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519-551.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2010).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G20이야기』, 서울: 삼화인쇄.

2. 국외문헌

- Bowman, Shayne & Willis, Chris(2003). We Media: How Audiences Are Shaping the Future of News and Information, The Media Center at the American Press Institute.
- Home Affairs Committee(2009). Policing of the G20 Protests: Eighth Report of Session 2008-09, House of Commons.
- Inquest(2009). Briefing on the Death of Ian Tomlinson, Inquest Lawyers Group.
-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2009). Demonstrating Respect for Rights? Follow-up, House of Lords & House of Commons.
- Madensen, Tamara & Knutsson, Johannes(2010). Preventing Crowd Violence, Lynne Rienner Publishers.
- O'Connor, Denis(2009a). Adapting to Protest,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Constabulary.
- _____ (2009b). Adapting to Protest: Nurturing the British Model of Policing,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Constabulary.
- Reicher, Stephen., Stott, Clifford., Drury, John., Cronin, Patrick., Adang, Otto. & Livingstone, Andrew. (2004). A New Approach to Crowd Psychology and Public Order Policing.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27(4): 558-572.
- The Criminal Law Act 1967.
- The Public Order Act 1986.

3. 기타

「세계일보」, 촛불시위 '과잉 진압' 논란, 여대생 군화발 폭행 비난여론 거세, 2008년 6월 2일,
<http://www.segye.com/>

「디지털타임스」, 스트리트 저널리즘의 진화, 2008년 6월 18일, <http://www.dt.co.kr/>
 A History of Violent Protest at G20 World Trade Meetings, The Times, 21 March 2009.
 Blair Peach, 30 Years on, The First Post, 8 April 2009

Critics Assail British Police for Harsh Tactics during the G20 Summit Meeting,
 The New York Times, 30 May 2009.

Can the Police and the Media Trust Each Other?, The Guardian, 27 April 2009.

G20 Death Video 'Touches' Family, BBC News, 8 April 2009.

G20 Police Authorized to Use Reasonable Force Minutes Before Tomlinson Died,
 The Guardian, 7 July 2009.

G20 Protests: Cry Havoc - and Let Slip a Rainbow Alliance of Summit Protesters,
 The Guardian, 28 March 2009.

G20: The Last Moments of Ian Tomlinson, The Daily Telegraph, 18 April 2009.

HMIC Policing Protest Report Published - Police Tactics Condemned, Bristol
 Indymedia, 28 November, 2009.

How the Police Fell in Love with Embroidery, The Guardian, 28 February 2010.

Ian Tomlinson: 'See You tomorrow, Barry, I I'm Sill Living and Breathing', The
 Times, 9 April 2009.

Man Who Filmed Ian Tomlinson G20 Attack Backs Investigation, The Guardian,
 8 April 2009.

Metropolitan Police Officer Suspended over Attack at G20 Death Vigil, The
 Guardian, April 15, 2009.

Metropolitan Police Service, 1 April 2009, 23:36 Hours: G20 Fatality: How Police
 View of Ian Tomlinson Death Changed, The Guardian, 8 April 2009.

New G20 Video Compounds Doubts over Police Account of Ian Tomlinson'S Death,
 The Guardian, 9 April 2009.

New Ian Tomlinson Photo Appears to Show Head Injury before G20 Death, The
 Guardian, 24 April 2009.

Officer Under Investigation over Ian Tomlinson's Death 'Should Not Have Been
 Working for Met', The Sunday Telegraph, 5 July 2009.

The Helper: Ian Tomlinson Was Obeying Police Orders, Says G20 Protester, The
 Guardian, 9 April 2009.

Truth Behind Tomlinson Footage, Channel 4 News, 13 April 2009.

Abstract

The Policing of the G20 Seoul Protests: A Case Analysis on the Death of Ian Tomlinson

Lee, Ju Lak

The G20 summit is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t will be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0. However, protests are expected during the Seoul summit, as a part of the deepening global war against capitalism. The Korean Police need to deal with these protests effectively in order to provide security to the participating leaders and make the meeting run on wheel as planned.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ath of Ian Tomlinson who died in the context of a heavily policed protest during 2009 G20 London summit. There are number of unique features regarding this incident, such as the public scrutiny of police conduct through video footage, the police use of excessive force, and the process to hold the police to account for misconduct. This incident caused serious damages to the public's faith in the British police.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during the G20 London summit British police had the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the clear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improper training in the use of force, poor communications with the media and protesters, inappropriate use of the close containment tactic, and the failure to display police ident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inducement of peaceful protests, the adoption of a set of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public order training that is more directed and more relevant to the public order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police, 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on with the media and protesters, enhancement of individual officer's accountability as public order policing strategies for G20 Seoul summit meeting. However,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 is that Korean police must place a high value on tolerance and winning the consent of the public.

Key Word : G20 Summit, Public Order Policing, Ian Tomlinson, Anti-global Protests, Case Analysis